

## 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8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3. 의안 회부일자

2011년 8월 22일

## 4. 근거법령

가. 지방공무원법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제3항제4호

나.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폐지 통보

(서울특별시 인사과-106374, 2011. 5. 23)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- 동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2011년 5월 23일 (법률 제10700호)로 「지방공무원법」이 일부 개정되고 2011년 8월 24일자로 시행되어 공무원의 구분 중 고용직공무원의 호칭이 완전 삭제됨에 따라 기존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

## < 검토의견 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가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11. 5. 23자로 「지방공무원법」의 일부 개정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, 별정직, 계약직, 고용직 중 제2조(공무원의 구분)제3항제4호의 고용직공무원 폐지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서 「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」 폐지가 통보되어 우리구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